



⑬ 수집운반된 폐기물의 처리 현황

구분	수집운반업체명	재활용업체명	처리량(kg)	비고
품목1				
품목2				
품목3				
품목4				
품목5				

「폐기물관리법」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9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위탁 처리실적, 처리방법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을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

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,  
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	수수료 없음
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 중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\*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의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.

신고인

(서명 또는 인)

작성방법

- ①란은 생활폐기물 배출실적 신고서 작성 주체의 상호(명칭)을 적습니다.
- ⑦란은 공동주택에 해당할 경우만 적습니다.
- 생활폐기물 수탁처리업체가 2개 이상일 경우는 ⑩, ⑪란을 추가하여 적습니다.
- ⑫란은 공동주택 등에서 배출되는 품목별 생활폐기물 처리량을 적습니다.